

지방의원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2
----------	-----

2019년 3월 7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12.28. 김호진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9.1.7.

다. 상정 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 2019년 3월 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도 들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같은 법체계 안에서조차 상호모순이 발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정수 110명 이하’로 4·5급 각 10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밖에 없어 최대 10개의 위원회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받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회는 매년 40조가 넘는 방대한 예·결산 심의의 중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외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없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처럼 지방자치법령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의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임.

2 건의안의 타당성 검토

- 지방의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상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에는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수 등은 대통령령(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59조).
- 이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의원 정수에 비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② 및 별표 5).

<표 1>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4급	5급 이하
이상 생략			
100명 이하	17명 이내	8명	9명
110명 이하	20명 이내	10명	10명
120명 이하	21명 이내	11명	10명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원 정수 110명 이하’에 해당되어 4·5급 각 10명, 총 20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별 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2>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별 전문위원 배치 현황(2019년 1월 기준)

구분	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운영	행정 자치	기획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복지	도시 안전	도시 계획	교통	교육	예산 결산	
4급	10	1	1	1	1	1	1	1	1	1	1	1	(공석)
5급	10	1	1	1	1	1	1	1	1	1	1	(대체)	1
계	20	2	2	2	2	2	2	2	2	2	2	1	1

※ 교육위원회는 임기제 5급 상당의 의안심사팀장이 5급 전문위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음.

- 2019년 1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 제한으로 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급 전문위원은 공석이고, 교육위원회 5급 전문위원은 임기제일반직 공무원(의안심사팀장)이 그 역할을 대체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위원회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집행기관의 직급체계에 상응하는 적절한 직급 구성 및 정수 조정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여도 소속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을 증원할 수 없어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음.

-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자치조직권에 기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의 본 건의안은 타당성과 시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한편,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18.12.31.)되었으나, 여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4·5급 각 1명의 전문위원을 배치해 위원회 간 형평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본 건의안의 내용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3 종합 의견

- 이상을 종합하면, 본 건의안은 의정수요 변화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자치조직권 확보 차원에서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김호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
----------	-----

발의년월일 : 2018년 12월 28일

발 의 자 : 김호진, 노식래, 서윤기, 강동길,
이광호, 이태성, 이성배, 양민규,
고병국, 김호평, 권순선, 봉양순
의원(12명)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 이유

-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도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 활동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같은 법체계 안에서조차 상호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정수 110명 이하’로 4·5급 각 10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밖에 없어 최대 10개의 위원회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회는 매년 40조가 넘는 방대한 예·결산 심의의 중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외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없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처럼 지방자치법령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의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3.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 기준 폐지 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필수기관으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도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의회가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위원회에는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지방자치법」 제59조에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를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같은 법체계 안에서 조차 상호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정수 110명 이하’로 4·5급 각 10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밖에 없어 최대 10개의 위원회만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등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다양한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매년 40조가 넘는 방대한 예·결산 심의의 중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명 이외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을 배치할 수 없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령의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의 인력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질적인 자율성 보장과 각종 의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